#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신고필증

1. 상호(명칭): (주)세종광유 두꺼비주유소

2. 성명(대표자): 대표이사 (생년월일: 1913년 46월 11일 )

3. 주소(사업장소재지):

경기도 안성시 계동 203-20번지 외 3필지

(전화번호: 6711070 )

4.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내역

가. 관리대상시설의 종류 및 명칭: 석유류의 제조 및 저장시설 지하저장탱크

나. 오염물질의 종류 및 저장용량: 저장시설: 총 5 기 총용량: 250,000.00 &

다. 그 밖의 주요내용:

휘발류 50000 1기, 경유 50000 3기, 등유 50000 1기

5. 토양오염방지시설 설치내역

가. 방지시설의 종류: FRP피복,누유검지관,탱크실

나. 설치내용:

다. 그 밖의 주요내용: FRP피복, 누유검지관, 탱크실

6. 누출검사대상시설 여부

[□] 해당 [□] 해당하지 않음 [■] 확인을 신청하지 않음

「토양환경보전법」 제 1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0조에 따라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설치(변경)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.

2007년 12월 5일

경기도 안성사장이라

## <변경 사항>

일 자	내 용	확 인	
2008-06-20	상호변경: (주)미양톨게이트→(주)남안성톨게이트	확인	
2008-11-13	상호변경 : (주)남안성톨게이트→(주)세종광유 남안성톨게 이트	확인	
2010-11-09	상호변경 : (주)세종광유 남안성톨게이트 →(주)세종광유 두꺼비주유소	확인	

## <참고사항>

일	자	내 <del>용</del>	확	인

## <저장시설>

시설명	오염물질	용량(단위)	수량(기)	완공일	시설형태	
지하저장탱크	휘발유	50,000.00 ℓ	1		지하저장탱크	
지하저장탱크	경유	50,000.00 ℓ	1		지하저장탱크	
지하저장탱크	경유	50,000.00 ℓ	1		지하저장탱크	
지하저장탱크	경유	50,000.00 ℓ	1		지하저장탱크	
지하저장탱크	등유	50,000.00 ℓ	1		지하저장탱크	

## <행정처분사항>

일	자	내 용	화	인